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401
----------	-------

발의연월일 : 2023. 11. 14.

발 의 자 : 권명호 · 정우택 · 백종헌
최영희 · 한무경 · 이달곤
임이자 · 지성호 · 권성동
김희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 실적 현황’(경찰청, 2022. 12.)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20년 117,549명, 2021년 115,882명, 2022년 130,283명으로, 음주운전 위반 건수가 여전히 많아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음주운전의 사전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에 따른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제6호”를 “제6호의2”로,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6의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96조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략)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 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 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u>5년</u>	3. ----- ----- ----- ----- <u>10년</u>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	5. ----- -----

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나. (생략)

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라.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5년

6. -----

-----3년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u><신 설></u> 7. 제1호부터 <u>제6호</u>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u>1년</u>(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u>1년</u>).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 (생략) ③ (생략)	<u>6의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u> <u>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u> 가.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u>제6호의2</u>----- ----- ----- ----- -----<u>2년</u>----- ----- ----- ----- <u>2년</u>----- ----- -----. 8.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